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3. 7. 8.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6. 24.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93. 6. 28.
 - 다. 상정일자 : 제17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3. 7.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김영찬)
 - 가. 제안이유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안 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현행 규정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시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대부시 대부료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키 위한 것으로, 현재 마포구에는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의원) : 현실적으로 바람직한데 마포구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은?
 - 답변요지(김영찬재무과장) :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	-----

제출일자 : 1993. 6. 24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함.
2. 개정주요골자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3. 개정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3항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예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4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신설)</p>	<p>제24조(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p>서울특별시마포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p style="text-align: right;">'93. 7. 8. 총무제무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3. 6. 14.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93. 6. 28. 다. 상정일자: 제17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3. 7. 8)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무1과장 최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안이유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증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코자 함. 나. 주요골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세면제대상을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증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개정(안 제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자동차 면허세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등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에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로 개정(안 제2조제2항) ③ 자동차면허세 면제대상에서 상이등급수 “2급내지 5급”의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 적용을 “3급내지 5급”으로 개정(안 제2조제2항단서) ④ 과세면제 신청시 “상이등급 증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에서 “상이등급 신청서를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로 개정(안 제3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증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증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상이자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시책을 강구하려는 취지로서 특이사항 없음.
--	---